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76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민병덕 · 김영배 · 김승원
안호영 · 안도걸 · 남인순
박홍근 · 이수진 · 김 윤
임오경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지배주주등에 대해 신용공여 등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 재영위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자

의 범위를 기존 사업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에서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로 확대함(안 제20조).

나.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원칙과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지분매입을 위한 대출 금지 등 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액을 규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 시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마. 지배주주등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4조의5 신설).

바.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0조).

사.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을 정비함(안 제48조, 제50조 및 제5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제4호의3·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나.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선수금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4의3.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7의2.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10. “신용공여”란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제4호 중 “등록취소 당시”를 “등록이 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1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폐업신고 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선수금”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조사 및 감독”을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으로 한
다.

제3장제3절에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4조의2(선수금 운용의 원칙)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선수금을 운
용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3(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분을 매입
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위한 보증·담보 제공이거나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배주주 및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34조의4(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지배주주등의 행위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누구에게든지 제34조의4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신용공여에 관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배주주 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6(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조사 및 감독

제37조 다음의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삭제한다.

제3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를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를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의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3의4. 제34조의5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자

3의5. 제34조의6을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제50조제1항제2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의3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53조제2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
니한 자

10의3. 제34조의4제4항·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u>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자</u> <u>나.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선수금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u> <u>4의3.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u>
<u><신 설></u>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의2.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u>가. 이사</u> <u>나. 대표이사</u> <u>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u> <u>라. 감사</u> <u>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u>
8.·9. (생략) <u><신 설></u>	8.·9. (현행과 같음) <u>10. “신용공여”란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제40조에 따른 <u>등록취소당시 임원</u> 또는 지배주주였던	제20조(결격사유) ----- -----. 1. ~ 3. (현행과 같음) 4. -----<u>등록이 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u>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소 당시까지-----

<신 설>

제22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 지위 승계 등) ① 제18조제

5항에 따른 폐업신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자

가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불

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경

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는 폐업신고 전의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폐업신고 전의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

고 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

유로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

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⑫ (생략)

제3절 조사 및 감독

<신설>

할 때에는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선수금-----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3절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

제34조의2(선수금 운용의 원칙)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선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3(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을 위한 보증·담보 제공이거나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배주주 및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특

<신 설>

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하는 행위

제34조의4(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신 설>

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지배주주등의 행위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
와 담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누구에게든지 제34조의4제1
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
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신용공여에 관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
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
교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
으로 지배주주등 자신이나 제
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
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
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신 설>

<신 설>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신 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6(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 조사 및 감독

<삭 제>

제3장의3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

-----.

1. 제39조제1항-----

하고 위반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삭 제>
나.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삭 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	제48조(벌칙) ① ----- ----- ----- ----- ----- ----- -----

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 5. (생략)

② (생략)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 제9호 · 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의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3의4. 제34조의5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자

3의5. 제34조의6을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4호까지-----

3. 제34조의3의 금지행위를 한

②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 12. (생 략) ③ ~ ⑧ (생 략)	<u>자</u>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한 자 10의3. 제34조의4제4항 ·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1. · 12.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	--